

【사건번호 2017-028】 국토교통부 자동차 차대번호 등 데이터 사건

1. 개요

- 피신청인 : 국토교통부
-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
 - 자동차 등록번호(1~3자리) 및 차대번호(1~10)자리
- 데이터 신청 목적
 - 차량 부품 정보 안내 및 판매자 연결 서비스

2. 당사자 주장

가. 신청인

- 신청인은 차량의 부품정보제공 및 판매자 연결 서비스를 목적으로 차량번호(1~3자리) 및 차대번호(1~10자리) 데이터를 신청하였으나 거부됨
- 신청한 데이터는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 일부의 조합이므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데이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함

나. 피신청인

- 국토교통부는 2014년 개인정보영향평가를 받은 바 있으며, 이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번호와 차대번호는 조합되면 명확히 개인의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임
 -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 일부라 하더라도 조합하는 경우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공데이터로서 제공할 수 없음
-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전산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나, 민간업체에 이용 승인을 한 사례가 없음
- 이러한 사실관계를 고려하면 신청인이 요청한 데이터는 관련 법령상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

3. 사실조사

가. 이 사건 데이터의 수집 및 관리 체계

-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제69조에 따라 자동차의 신규·변경·이전·말소등록 등의 등록업무를 처리하고 이를 전자화하여 등록원부를 관리
- 시·도지사는 자동차를 신규등록한 경우 해당 자동차의 종류(승용·승합·화물·특수)와 용도(비사업용·운수사업용·외교용)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(자동차관리법 제16조 및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5조)
 -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(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)에 의하여 각각 순서대로 부여하며, 1~2자리의 숫자는 자동차의 종류, 3자리의 한글은 자동차의 용도를 표시(자동차등록령 제21조제1항)
- 차대번호는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을 목적으로 차대 또는 차체에 표기한 아라비아숫자 및 알파벳 글자를 의미(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)
 - 차대번호는 제작회사군·자동차특성군 및 제작일련번호군의 총 17자리로 구성하며,
 - 차대번호 중 1~3자리는 자동차 제작사 및 자동차 종별 구분, 4~9자리는 차종, 차체형상, 세부차종, 안전벨트 고정개소, 제동장치의 형식, 원동기 등의 정보, 10자리는 모델의 연도를 표시하고,
 - 11자리는 제작공장의 위치, 12~17자리는 제작일련번호를 표시함(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1)

나. 이 사건 데이터의 제공 현황

- 공공데이터 제공(공공데이터법)
 - 국토교통부는 2014년 11월 실시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대해 개인 정보영향평가를 통해 자동차 등록번호 및 차대번호를 '조합되면 명확히 개인의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'로 분류

- 2015년 자동차등록정보에 관한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사건이 신청되어, 위원회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비식별 또는 분리조치하는 등 신청인의 이용목적에 따라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공하도록 권고
-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공단, 신청인과 협의하여 아래와 같이 자동차 등록번호 및 차대번호 일부를 제공

구분	자동차등록정보	공개여부	샘플데이터	비고
1	자동차등록번호	부분가능	경기(XX)우(XXXX)	개인정보
2	차대번호(17자리)	부분가능	KMHDG41DBCU(XXXXXX)	개인정보

※ 2015-012사건 데이터 제공 범위 중 발체

o 전산자료신청을 통한 제공(자동차관리법)

-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자료(이하 '전산자료')를 이용하려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용 가능
- (신청) 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1. 자료이용의 목적 및 근거, 2. 자료의 범위, 3. 자료의 제공방식·보관기관 및 안전관리대책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(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)
- (심사)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1. 신청내용의 타당성·적합성 및 공익성, 2. 개인의 사생활 침해여부, 3. 자료의 목적외 사용방지 및 안전관리 대책 등을 심사하여 신청인에게 통보(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)
- (승인)
 - 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신청(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3항)
 - 국토부장관은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3개 항목 및 4. 신청한 사항이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그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, 5.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자동차관리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(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5항)

- (사례) 국토교통부 담당자에 따르면 보험개발원(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의무보험가입관리), 자동차매매조합연합회(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매매업무),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협회(자동차관리법에 의한 폐차업무), 유료도로 운영회사(유료도로법에 의한 통행료체납금 통지업무) 등이 동 조항에 근거하여 전산자료 이용

다. 이 사건 데이터의 공공데이터 해당 여부

- “공공데이터”는 “데이터베이스,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”로서(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),
- 이 사건 데이터는 국토교통부가 자동차관리법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한 업무수행을 위해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는 데이터이므로 공공데이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

라. 개인정보 해당 여부

-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는 “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”를 비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
 - 다만 개인에 관한 사항, 즉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공개가 거부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, 공개의 이익과 형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 필요(대법원 2003.12.12.선고 2003두8050판결 등)
 - 개인정보보호법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자동차관리법상 등록원부에 등록번호, 차대번호와 함께 차명, 사용본거지, 자동차 소유자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, 이와 관련하여 자동차 등록번호 및 차대번호가 자동차등록원부 등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경우라면 개인정보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(개인정보정책과-231(2017.8.30.))

- 위원회에서는 자동차 관련 정보에 대해 네 차례의 분쟁조정(2014-014사건, 2015-012사건, 2016-005사건, 2017-007사건*)을 진행하였고, 개인정보를 제외한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권고

* 2017-007사건의 경우 해당 데이터가 개인정보인 경우에도 신청인이 정보주체로부터 '피신청인이 이 사건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사실'에 대해 동의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해당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권고

4. 조정 내용

가. 조정 결정 사항

-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제공한다.
 - 다만, 국내에 소수 등록된 차량의 경우, 당사자 협의를 통해 제외할 수 있다.
-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데이터의 제공비용 및 이용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.
 - 다만, 공공데이터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필요최소한의 비용을 초과할 수 없으며, 공공데이터법의 취지에 반하는 부당한 이용제한을 할 수 없다.

나. 조정 결정 이유

- 「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1항에 따르면, 공공기관은 보유·관리하는 공공데이터가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제공해야 함
 -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를 개방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등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있어 제공이 어렵다고 주장하나, 해당 데이터는 그 자체로 개인정보가 아니며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움
 - 다만, 국내에 소수 등록된 차량 등 그 희귀성으로 인해 제한된 정보로도 차량 소유주가 식별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, 당사자 협의*를 통해 제한할 수 있도록 함

* 신청인이 제안한 바와 같이 국내 500대 이상 등록된 차량의 데이터를 제공대상으로 한다면, 차량의 희귀성으로 인해 개인이 식별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됨

- 이 사건 데이터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있는 데이터로 보기 어려우나, 피신청인이 데이터 제공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여 신청인이 이 사건 데이터를 신청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용하기를 원하고 신청인도 이에 동의한 바, 데이터 제공 시 제공비용 외에도 상기 합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소정의 이용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
- 다만, 제공비용의 경우 공공데이터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필요최소한의 비용을 초과할 수 없으며, 이용조건인 경우 동법의 취지에 반하는 부당한 이용제한이 포함되지 않도록 신청인과 충분히 협의할 것을 권고함

5. 분쟁조정결과

- 위와 같은 조정 내용에 양 당사자가 동의하여 조정성립으로 사건 종료